

2026

농산물품질관리사 관계 법령

엠북 농수산법규

공부혁명!
mbook.kr

- ◆ PDF 전자책
- ◆ 법, 시행령, 시행규칙 종합 정리
- ◆ 최근 법령 개정 및 신설 내용 반영
- ◆ 3시간 15분 완성

도서명 : 농산물품질관리사 관계 법령

ISBN : 979-11-7393-126-0

발간일 : 2025-12-04

형식 : 전자책(PDF)

저자 : 김병연 교수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17,000원



농산물품질관리사 관계 법령

[목차]

제1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p3)

제2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p68)

제3편 원산지표시법(p129~142)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붉은색은 시행예정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1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이하 법)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품질관리

제3장 지리적표시

제4장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제5장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

제6장 지정해역의 지정 및 생산/가공시설의 등록/관리

제7장 농수산물 등의 검사 및 검정

제8장 보칙

제9장 벌칙

[약어]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수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장관들은 농림부장관, 해수부장관

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원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시군구는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인증기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

농수산물등은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수산물등은 수산물, 수산가공품

사유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등은 거부, 방해, 기피

중점기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우수관리는 농산물우수관리

제1장 총칙

1~4조

1. 목적

- 농수산물의 적절한 품질관리를 통해 안전성 확보, 상품성 향상,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유도
- 농어업인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

2. 정의

- 법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농업식품기본법과 수산업기본법 따름

가. 농수산물

- 농산물은 농업활동, 수산물은 어업활동과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소금은 제외)

나. 생산자단체

- 1) 농업 생산력 증진과 농업인 권리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 조직
- 2) 수산업 생산력 향상과 수산인 권리보호를 위한 수산인의 자주적 조직
- 3)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 4)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

다. 물류표준화

- 농수산물 운송/보관/하역/포장 등 물류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기기, 용기, 설비, 정보 등을 규격화해 호환성과 연계성을 원활히 함

라. 우수관리

-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농업환경 보전을 위해 농산물 생산, 수확 후 관리/유통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농업용수 등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히 관리

(비고)

- 축산물은 제외
- 관리는 저장, 세척, 건조, 선별, 박피, 절단, 조제, 포장 포함

마. 이력추적관리(이하 추적관리)

- 농수산물(축산물을 제외) 안전성 등에 문제 발생시 농수산물을 추적해 원인을 규명하고 조치하도록 생산부터 판매까지 단계별로 정보 기록/관리

바. 지리적표시

: 농수산물등의 명성/품질, 특징이 본질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농수산물등에 다음 표시

1) 농수산물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되었음 표시

2) 농수산가공품

- 어업허가 받은 자가 어획한 어류를 원료로 하는 수산가공품은 특정 지역에서 제조/가공된 사실,

- 이외 농수산가공품은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로 제조/가공된 사실 표시

사. 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 동일한 품목에 대해 지리적표시 할 때 타인의 지리적표시와 발음은 같지만 해당 지역이 다른 지리적표시

아. 지리적표시권

- 법에 따라 등록된 지리적표시(동음이의어 지리적표시 포함)을 배타적 사용할 지식재산권

자. 유전자변형농수산물

-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해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

차. 유해물질

-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생물**

독소), 방사성물질(**방사능**), 유독성 물질, 처장 고시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 끼칠 물질

카. 농수산가공품

- 1) 농산가공품은 농산물을 원료나 재료로 해 가공한 제품
- 2) 수산가공품은 수산물을 다음 원료나 재료의 사용비율, 성분함량 등의 기준에 따라 가공한 제품
 - a) 수산물을 원료(재료)의 50%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
 - b) 상기 제품을 원료(재료)의 50% 넘게 사용해 2차 이상 가공한 제품
 - c) 수산물과 그 가공품, 농산물(임산물, 축산물 포함)과 그 가공품을 함께 원료(재료)로 사용한 가공품인 경우 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함량이 농산물이나 그 가공품 함량보다 많은 가공품

3.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

가. 설치

- 장관들 소속으로 둔다
- 법에 따른 농수산물, 수산가공품 품질관리 등 심의

나. 구성

- 1)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 포함 위원 60명내
- 2)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 지명
- 3) 위원
 - a) 교육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농촌진흥청, 산림청,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 소속 기관 장이 지명한 자와

농림부 공무원 중 장관이 지명한 자나 해수부 공무원 중 해수부장관이 지명한 자

b) 다음 단체/기관(이하 **농협중앙회**등) 장이 소속 임직원 중 지명한 자

- 농협중앙회
- 산림조합중앙회
- 수협중앙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한국식품산업협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한국식품연구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한국소비자원

c) 다음 중 장관들이 위촉한 자

-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추천 자
- 농수산물 생산/가공/유통, 소비 전문 지식, 경험 풍부한 자
- 임기 3년

다. 운영

1) 심의회에 농수산물등의 지리적표시 등록심의를 위한 지리적표시 등록심의 분과위 둔다

2) 심의회의 업무 중 특정 분야의 효율적 심의를 위해 분야별 분과위(안전성 분과위, 기획/제도 분과위) 둘 수 있다

3) 분과위에서 심의한 사항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봄

4) 농수산물 품질관리 등 국제 동향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해 심의회에 연구위원 둘 수 있다

라. 직무(심의 사항)

- 표준규격, 물류표준화
- 우수관리, 수산물품질인증, 추적관리
- 자리적표시
-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 농수산물(축산물 제외) 안전성조사, 그 결과에 대한 조치
- 농수산물(축산물 제외), 수산가공품 검사
- 농수산물 안전, 품질관리 정보 **공개 범위, 주기, 시기, 방법**
- **안전성조사 결과 중 국민에게 제공할 필요 있는 중요 정보**
- 수산물 생산/가공시설, 해역 위생관리기준
- 수산물등의 중점기준
- 지정해역 지정
- 다른 법령에서 심의회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 농수산물, 수산가공품 품질관리에 관해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4. 변경신고의 수리

- 인증기관, 우수관리시설, 수산물 품질인증기관, 이력추적관리등록 변경신고 10일내, 검정기관 변경신고 20일내 수리 여부 통지
- 기간내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 연장 미통지시 기간(처리기간 연장/재연장시 해당 처리기간) 끝난 날 다음 날 수리 의제
(Copyright) 공부혁명 엠틱(mbook.kr)

제2장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및 품질관리

5~31조

제1절 농수산물의 표준규격

1. 표준규격(포장규격과 등급규격)

- 농수산물은 축산물 제외

- 가) 장관들은 농수산물의 상품성 제고, 유통 능률 향상, 공정 거래 실현을 위해 표준규격 정할 수 있다
- 나) 표준규격에 맞는 농수산물(이하 표준규격품) 출하 자는 포장 곁면에 표준규격품 표시 가능

2. 권장품질표시

- 농산물은 축산물 제외

- 가) 장관은 포장재나 용기로 포장된 농산물의 상품성 제고, 공정 거래 실현을 위해 표준규격품 표시 안한 농산물 포장 곁면에 등급/당도 등 품질 표시 기준 따로 정할 수 있다
- 나) 농산물 유통/판매 자는 표준규격품 표시 안한 때 포장 곁면에 권장품질표시 가능

제2절 농산물우수관리

- 농산물은 축산물 제외

1. 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인증)

가) 장관은 우수관리 기준(이하 우수기준) 고시 요

나) 우수기준에 따라 농산물을 생산/관리하는 자나 우수기준에 따라 생산/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해 유통하는 자는 인증기관의 우수인증 받을 수 있다